

#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하 남 시  
【상 수 도 과】

#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1. 제안이유

-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 수립(안 제4조)
- 나. 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등(안 제5조)
- 다. 음수대의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안 제6조)

##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5. 관계법령 발췌서

-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 조례

##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기간 : 2016년 9월 9일 ~ 9월 28일 (20일간)
-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관련 협의사항 : 의견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 의견없음

## 9. 참고사항 : 덧붙임

-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 수돗물 음수대 설치조례 제정 통보 공문

## 10. 관련부서 :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도과

#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회용 병입수”란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겨서 제조·판매되는 먹는 물을 말한다.
2. “먹는 물”이란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3.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직결급수”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하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 나. 하남시의회
  - 다. 하남도시공사
  - 라.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6. “공공장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도로, 공원, 휴양림, 버스·택시정류장, 전철역, 도서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널리 보급하고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수돗물 음수대(이하 “음수대” 라 한다)의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 페트(PET)병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음수대 설치와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하남시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일회용 병입수의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
3.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제작·보급지원 및 홍보계획
5.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등)**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제6조(음수대의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
2.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 및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수대를 설치하려는 건물의 내외부에 설치된 배관이 노후되었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에 냉각 및 가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친환경 재질의 휴대용 물병(텀블러)을 보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와 일회용 병입수 사용 제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수질검사)** ① 음수대의 위생 및 유지관리는 음수대가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한다.

② 시장은 설치 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상수도 및 급수관 개량사업
2. 수돗물 직접 음용 홍보사업
3. 일회용 페트병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에 대한 교육사업
4.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 및 교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수돗물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하남시보 또는 하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거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는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상수도과
입 안 자	부서장	상수도과장
	직위·성명	한상용
	팀 장	상수도관리팀장
	직위·성명	송명현
담당자	송명현	
	성명·전화번호	(5324)

# 【관계법령 발췌서】

##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편리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회용 병입수”란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겨져 제조·판매되는 먹는 물을 말한다.
2. “먹는 물”이란 자연 상태의 물,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등을 말한다.
3. “수돗물 음수대”란 정수장에서 급수된 수돗물이 별도의 정수나 여과 등의 처리 없이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직결 급수”란 정수센터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건축물의 물탱크시설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음수대까지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 나. 경기도의회 사무처
  - 다. 도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 라. 도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도지사가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6. “공공장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도로, 휴양림, 수목원, 공원, 버스·택시정류장, 전철·철도역, 도서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널리 보급하고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에 수돗물 음수대(이하 “음수대”라 한다)의 설치 및 보급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일회용 페트(PET)병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 및 초·중·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음수대의 설치와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사용을 장려하여야 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음수대의 보급 및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저감시키기 위한 경기도 수돗물 음수대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일회용 병입수의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계획
3.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휴대용 물병(텀블러)의 제작·보급지원 및 홍보 계획
5. 제6조에 따른 음수대 설치에 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등)**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일회용 병입수의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행사 및 회의

**제6조(음수대 설치 및 휴대용 물병 보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공간
  2. 공공기관의 신축 건물 및 시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음수대를 설치하려는 건물의 내외부에 설치된 배관이 노후되었거나 직결급수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에 냉각 및 가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음수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친환경재질의 휴대용 물병(텀블러)을 보급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공공장소의 관리자에게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돗물 음용사업 권장)** ① 도지사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돗물 음용 촉진사업을 권장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와 일회용 병입수 사용제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수질검사)** ① 음수대의 위생관리 및 유지관리는 음수대가 설치된 공공기관에서 한다.

- ② 도지사는 설치 운영 중인 음수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고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2. 노후 공동 급수관 및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
  3. 수돗물 직접 음용 홍보사업
  4. 일회용 페트병 등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등에 대한 교육사업
  5. 공공기관의 음수대 설치·교체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경기도보 또는 경기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도지사는 수돗물의 음용을 촉진하거나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사항】

##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 수돗물 음수대 설치조례 제정 통보 공문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 경기도수자원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 수돗물 음수대 설치조례 제정 통보

1. 상하수과-7973('16. 5. 12.)호 및 -9483('16. 6. 8)호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촉진조례가 2016년 5월 5일부터 시행되어 경기도에서는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과 동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의 수돗물 음수대 설치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각 시·군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내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불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음수대 설치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설치근거 조례 제정등 제도정비를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수돗물 음용촉진 근거조례 제정여부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시·군 수도사업자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며, 환경부에서도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상수도 정책분야 ③수돗물 음용을 제고노력, 2017년 부터)에 반영한 평가지침이 시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음용촉진 조례 1부. 끝.